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및 적용범위 (국세청)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총칙) (고용노동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정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10% 추가) 2
- ✓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점 3
- ✓ 인력승달 업무형태와 특성 및 소득과세방법 4
- ✓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 제공과 임차료 부담의 근로소득 비과세 조건 5
- ✓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 익금산입의 쟁점항목 10가지(유권해석 등) 6
- ✓ 중소기업의 판별 기준(중소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 7

이달의 특집

- ✓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부) 5

4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중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중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금)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납부 개별소비세 1분기 신고납부
30(수)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정보

- ✓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 112

회계정보

-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및 적용범위 (국세청) 115

노무정보

-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총칙) (고용노동부) 130

-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10% 추가)
 - 안세재경저널 2025/2/12일자 통권 1714호

과세표준	세율	비고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 매월 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봉사료는 5%)	3%(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이자	대부분의 이자소득	14%
	비영업대금이익(법인이자 포함)	25%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배당	대부분의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간 배당소득	25%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45%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소득(차등과세)	90%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사적연금	3-5%
기타	대부분의 일반적 기타소득	20%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 (2억원 이하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등	15%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매월분 종교인소득	기본세율(간이세액표)

◎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10% 추가)

- 안세재경저널 2025/2/19일자 통권 1715호

구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이자·배당소득		각 지급하는 때 발급(단,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통지 가능)
근로소득	계속근로자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발급(연말정산) (단, 2인 이상 복수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즉시 발급해야함)
	중도퇴사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그 외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발급
연금소득		지급하는 때 발급(단,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액의 연간 합계 원천징수세액 명세 등 통지 가능)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그 외 기타	실제 지급하는 때 발급(단, 100만원 이하 소액이면 발급의무 생략 가능)

◎ 인력조달 업무형태와 특성 및 소득과세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2/26일자 통권 1716호

개념, 구분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용역대가
독립성	종속적 고용관계	종속 단기고용	독립성	독립성	독립성
법인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법인+개인
계속성	계속	계속 (3개월 미만)	계속	일시 우발	계속
복수소득	거의 단일	여러 현장, 복수	다수 상대방	다수	다수
과세자료	연말정산	매월 지급명세	매월 지급명세	매월 지급명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원가입증	약 30% 이내	하루당 15만원	실비대응	법정비용 60%	자체회계기장
원천징수	근로소득징수	일용소득징수	3.3%	8.8%	사업비용 등
세금계산	일반세율	단일세율	일반세율 (단일세율 원천징수)	소득율 40% 세율 20% → 최종 8.8%	실제기장 대로임
종합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종합합산	열거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기장	표준공제	단순계산	복식기장	법정경비 60% 등	실제회계기록
소득자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매출 세금계산서)

◎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 제공과 임차료 부담의 근로소득 비과세 조건

- 안세재경저널 2025/3/5일자 통권 1717호

개념항목	해당내용, 조건, 계산방법
과세원칙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해당액은 추가급여로 근로소득 합산임(사택임차료로 회계처리함)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3호 저목(복리후생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시행규칙 제9조의2 충족시 비과세
해당인원	1. 회사 소유 사택(대기업도 적용 가능) ① 주주아닌 임원+소액주주임원 ② 임원아닌 종업원 ③ 국가 등의 근로소득자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소요자금의 무상·저리 대여금 혜택 비과세 (회사와 친족관계 제외, 지배주주 등인 종업원은 제외함) 3.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용 부담의 종업원 혜택금액(대기업도 가능) 4.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사택제공이익(무상제공, 임차무상제공 등)
적용사택 등	① 사택 : 사용자(회사) 소유 주택을 종업원과 임원에 무상·저가로 제공 ② 임차제공 : 회사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 무상제공 후 직원간 순환주택 임차주택사용의 연속성 : 기존 종업원 전근·퇴직·이사하면 승계직원 입주 (단, 입주희망자 없거나 임차잔여기간 1년 미만이면 연속성 불필요)
비과세 금액	한도금액 규정 없음(조건 충족시 전액 비과세, 통념상 월 200만원 내외)

◎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 익금산입의 쟁점항목 10가지(유권해석 등)

- 안세재경저널 2025/3/19일자 통권 1719호

항목, 구분	손금, 익금 등	개요, 내용, 적용방법
임직원할인금액	손금산입	해당회사 임직원 할인액 + 계열사 임직원 할인보전액
근로자 출산양육지원	손금산입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로 반영한 경우(근로소득합산안함)
사내 근로복지기금	손금산입	회사 내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내국법인이 출연하는 금품
임원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납입보험료 중 해지환급예상액은 자산처리, 기타부분액은 손금산입
상여소득세대납	손금불산입 대표상여처분	법인대표이사에 귀속처분된 상여금의 소득세 해당액 납부
임원사망 상속인보험금	손금불산입	임원상해보험가입 관련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손금산입	법인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비자발적 퇴직자 포함)
인테리어설비 폐기손	손금산입	새로운 인테리어 설치하면서 폐기처분한 기존 인테리어 잔존액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법령상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 불이행의 제재금이므로
퇴직금 포기액	손금, 익금산입	대주주 임원이 포기한 퇴직금을 퇴직소득과세하며, 해당액을 익금산입하되 관련 퇴직금을 손금산입대응시킴

◎ 중소기업의 판별 기준(중소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

- 안세재경저널 2025/3/26일자 통권 1720호

개념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업종범위	모든 업종(전문 면허업 제외)	열거된 모든 사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주업판단	3년평균매출액 최대업종	해당 과세연도 매출 최대 업종
비영리포함	제외함(사회적 기업은 가능)	가능함(유권해석 : 서면인터넷-391, 2006. 2. 21)
업종별 규모	3년 평균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해당연도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규모 상한	직전년 재무상태표 자산 5천억 미만	해당년도 종료일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독립성 충족	①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아닐 것 ② 자산 5천억 이상 회사 30% 이상 소유 안됨 ③ 소속집단 합산 매출 3년 평균규모기준 이하	①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아닐 것 ② 자산 5천억 이상 회사 30% 이상 소유 안됨 ③ 해당연도 합산매출액 규모 이하
유예기간	중소기업 규모 확대 : 기준 초과시 5년간은 유예 적용	규모확대연도와 + 5년간 유예
유예 제외	대기업집단에 합병·편입된 경우	좌동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 중소기업부 -

가업승계 또는 경영승계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크게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가업승계란 소유권승계와 경영권승계라는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제도는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요 세제지원제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600억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이는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도입된 제도로서 상속인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가업과 관련된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 그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기업 등의 주식을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4)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이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증자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가업과 관련된 증여세 납부세액을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금액을 납부유예하는 제도입니다.

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액을 20%를 할증평가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주식에 한해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6)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20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개정은 가업상속공제액의 상향조정 및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함과 동시에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한 작년과는 달리 공제한도액 및 세율 등 보다 세부적인 요건의 합리화에 힘쓴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2.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구간 확대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
6. 조세포탈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이하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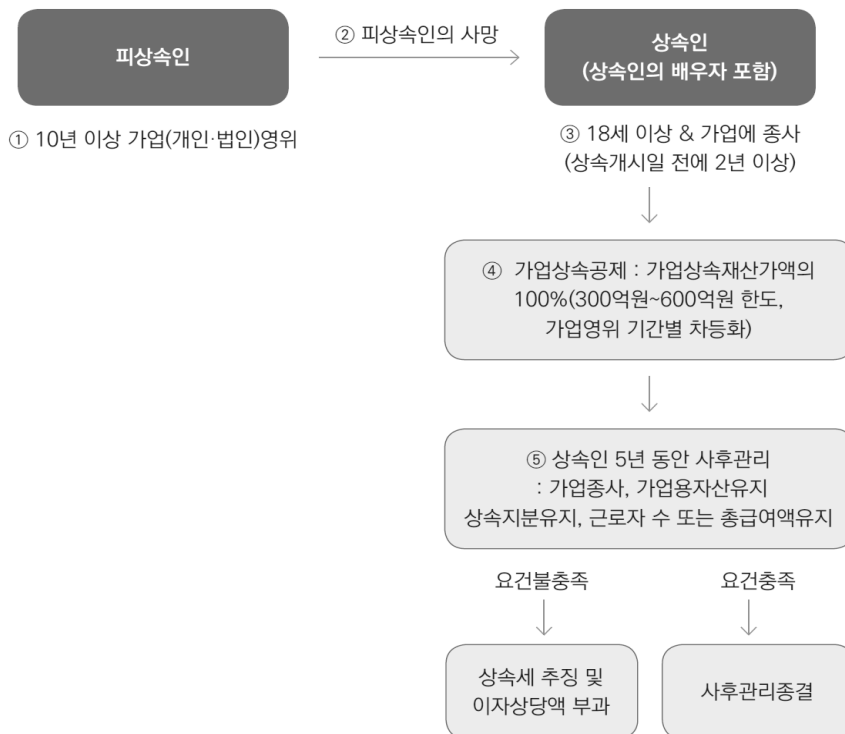
1. 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600억원 한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기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30억원 한도) 등이 적용되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600억원을 한도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상속공제는 법개정 전 1억원에서 차차 공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재 업력에 따라 차등하여 최대 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상속공제요건의 완화와 공제액의 대폭 상향은 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중견 장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요건과 사후관리 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기업상속공제 요건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후관리 유형 및 기업상속재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관련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현행법령상 적용되는 기업상속공제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개인기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법인기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및 제11장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7일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담보된 채무액을 빼는 규정은 법인 기업의 기업상속재산가액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text{기업상속재산} = \text{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text{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기업상속재산 =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기업의 경우 기업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text{기업상속재산} = \left\{ \text{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times \left(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right\}$$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①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은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이 해당됩니다.
- ②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여기에는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업무무관 부동산과 업무무관 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여금으로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는 제외되지만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 ④ 과다보유현금 :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의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현금을 “과다보유현금”이라고 하여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합니다.
- ⑤ 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 이는 투자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채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상반된 입장
<가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외 다수)	
<법원>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2018두 39713, 2018.07.13. 국패)	

1-2. 기업상속공제액

(1) 공제금액의 계산 및 공제한도적용

기업상속공제액은 기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즉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text{기업상속공제액} = \text{Min}[\text{①}, \text{②}]$$

① 기업상속재산가액×100%

② 한도 :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여기서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각 기업별로 하는 것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2016. 2. 4. 이전 상속분의 경우 상속인 1명)이 모두 상속받

는 경우에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 기업상속인이 1개의 기업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1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2개 이상의 기업을 기업별로 각각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신고 된 기업 외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재산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업상속공제액이 600억원을 한도로 상향됨에 따라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명이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각각의 기업이 그 영위기간이 다른 경우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기업상속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세과-255, 2014.3.11.)에 의존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6년 3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도 기업상속공제가 인정되어 업력이 달라 한도가 상이한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받고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영위기간	상속가액	공제순위	공제한도액	공제액
35년	100억원	1순위	600억원	100억원
15년	500억원	3순위	Min[(600억원-100억원-400억원), 300억원]	100억원
27년	400억원	2순위	Min[(600억원-100억원), 400억원]	400억원

이와 같이 기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체한도금액인 600억원과 개별한도금액인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감안해 기업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① 전체 한도 :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가장 큰 공제한도금액 즉, 기업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금액을 전체 한도금액으로 산정함
- ② 개별 한도 : 기업별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산정함

<참고사항> 기업상속공제액 개정연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기업계속영위기간	공제액	공제한도액
2007.12.31. 이전	5년 이상	기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2008.1.1.~ 2008.12.31.	15년 이상	Max[①, ②] ① 기업상속재산가액 × 20% ② 2억원(미달시 기업상속재산가액)	30억원

2009.1.1.~ 2011.12.31.	10년 이상-15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6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80억원
	20년 이상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억원
2012.1.1.~ 2013.12.31.	10년 이상-15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7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100억원
2012.1.1.~ 2013.12.31.	15년 이상-20년 미만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7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150억원
2012.1.1.~ 2013.12.31.	20년 이상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70% ② 2억원(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2014.1.1. 이후	10년 이상-15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2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
2018.1.1. 이후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
2023.1.1. 이후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400억원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600억원

(2)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2017년 12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는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따져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지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효율적 전수와 활용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속세로 인해 가업상속인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유지·존속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견기업의 상속일 것

따라서 기업상속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납부능력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중견기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② 납부능력 기준요건 충족

기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능력 기준충족 요건 = ① ≤ ②

- ①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1)
- ②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2) × 2

(*1)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중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외의 상속재산으로서 해당 기업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고 해당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2)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기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상속세 납부의무)에 따라 계산한 기업상속인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납부능력요건의 이해
<p>상속개시일 : 2024년 4월 4일 상속인 : 아들 A, 딸 B 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중앙의 기업상속재산가액은 50억원으로서 현재 기업승계 준비 중인 아들 A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니다. ② 예금 70억원 중 30억원은 아들 A가, 나머지 40억원은 딸 B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니다. ③ 딸 B는 상속 개시 전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④ 상속인의 채무 중 아들 A는 10억원, 딸 B는 10억원이 귀속됩니다. <p>상속개시 당시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의 해당여부는?</p> <p>납부능력요건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견기업의 상속일 것 : 여 ② 납부능력요건 충족여부 : ㉠ 20억원 ≤ ㉡ × 2 = 약 41.6억원 →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속인의 기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a+b-c-d=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아들 A의 상속재산가액 : 기업주식가액 50억원 + 예금 30억원 = 80억원 b. 아들 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0원 c. 아들 A에게 귀속된 채무 : 10억원 d. 기업상속재산가액 : 50억원 ㉡ 기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약 20.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속세 과세가액 : 50억원+70억원+20억원-20억원=120억원 b. 상속세 과세표준 : 120억원-5억원(일괄공제)-2억원(금융재산 상속공제)=113억원 	

- c. 상속세 산출세액 : 113억원×50%-4.6억원=51.9억원
- d. 아들 A가 부담하는 상속세액 : 51.9억원× [93.5억원(*1)×(70억원(*2)/100억원(*3)) ÷163억원]=약 20.8억원
- (*1) 상속세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113억- 20억원-5천만원(증여재산 공제) =93.5억원
- (*2)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 : 70억원-0원=70억원
- (*3) 상속세 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120억원-20억원=100억원

∴ 아들A는 납부능력요건을 충족하여 기타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1-3. 기업상속공제 사전요건

(1) 기업규모 및 업종 요건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규모기준) 및 제3호(독립성 기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참고사항

중소기업의 범위

1.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영위 요건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부터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새롭게 다시 분류하였습니다.

[별표] <개정 2023. 02. 28.>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기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기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나. 광업(05~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 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으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자. 정보통신업(58~63)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에서는 “중소기업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내일 것,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실질적인 독립성

매출액 기준 외에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아래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뿐 아니라 간접소유를 포함하며,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삭제 <2020. 6. 9.>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라. 삭제 <2017. 12.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③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3. 자산총액 기준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중견기업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라고 규정하여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나, 2017년 2월 7일 세법을 개정할 때 이를 보완하여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세법을 개정할 때 중견기업에 대

한 기업상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범위 중 매출액 요건을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그 기준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한번 더 확대하였습니다.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③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액이 5천억원(2022년 12월 31일 이전 4천억원, 2021년 12월 31일 이전 3천억원) 미만일 것

참고사항	중견기업의 범위
<p>1.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영위 요건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2017년 2월 7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p>	
<p>2. 독립성 기준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해야 합니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p> <p>④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p>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p> <p>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3. 매출액 기준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2) 기업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기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업경영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지만, 현재는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직접 경영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더 이상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 오다가 나이, 건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직접 경영이 어려운 경우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있는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기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기획재정부조세법령-571, 2022.05.30.)”이라고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여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그 기업의 영위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함(법령해석재산-0227, 2015.10.28.)’이라고 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을 변경하기 이전 가업의 경영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과세당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이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명확히 하면서 가업의 업종을 유지하는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2월 17일 해당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대분류 내(중분류 간)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즉 영위한 기간을 합산(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경영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지분 요건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합니다(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주식 보유비율 50%(상장법인은 3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쌍방특수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층연구

10년 이상 보유주식에 한하여 기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1. 2022년 1월4일 이전 결정·경정 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수증받거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업상속공제가 배제됨

조삼2020서0398, 2020.12.28.

피상속인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상속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례는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극단적으로 상속일 직전 피상속인인 부모가 현금을 상속하는 대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삼2019서1956, 2019.07.11.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청구주장대로라면 극단적으로는 상속개시일 바로 전날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도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교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기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주식보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 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법문언상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아니라 주식보유비율을 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 2022년 1월4일 이후 결정·경정 분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5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경정하는 분(2022년 1월 5일 이전 상속개시분도 가능)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기업상속공제 대상은 아니라고 해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수증받거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기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10, 2022.01.05.

<요지>

기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기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회신>

(질의1) 기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 (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업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4) 종전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일 것

이는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이 경우 기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기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기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업상속공제(2차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상속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공동상속인이 순차로 사망했을 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중 기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모두 기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추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 법령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으로 명확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 피상속인 요건

기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으로 재직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설립일 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40%(상장법인 20%) 이상

되는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을 통산하여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개인기업의 경우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이 50%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개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한 경우 : 이는 전체 가업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기간이 50% 미만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합니다.
- ③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 평균수명의 증가와 늦은 기업승계로 인한 ceo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서 계속 재직한다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기간이란 연속이 아닌 통산을 의미합니다(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이 경우 법인가업에 대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란 최대주주 등 지분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법인의 설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로 재직한다는 의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전문경영인 등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의미)
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①, ②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것임

(6) 상속인 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및 상속개시일 전 가업종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함이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

다만, 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65세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를 넘어 사망한 경우라도 ②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망의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2) 공동상속의 허용

2016년 2월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은 제외)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가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요건을 충족한 상속인들이 1개의 기업을 공동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임원 취임요건

상속인 및 그 배우자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4) 대표이사 등 취임요건

상속인 및 그 배우자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5)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위 상속인의 요건을 그 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

인의 사위, 며느리)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는 인격에 따라 차별하여 법 인사업자에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구분	2014.02.20. 이전	2014.02.21. 이후	2016.2.5. 이후	2023.1.1. 이후
피상속인 요건	<p>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p> <p>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p> <p>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p>	<p>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p> <p>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p> <p>②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p> <p>③ 50% 이상의 기간</p> <p>④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한 경우로 한정)</p>	<p>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p> <p>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p> <p>② 가업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p> <p>③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p> <p>④ 50% 이상의 기간</p> <p>⑤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한 경우로 한정)</p> <p>⑥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p>	<p>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p> <p>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p> <p>② 가업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p> <p>③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다음 중 어느 하나</p> <p>④ 50% 이상의 기간</p> <p>⑤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한 경우로 한정)</p> <p>⑥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p>
상속인 요건	<p>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p> <p>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p> <p>③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p>	<p>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p> <p>② 상속개시일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p> <p>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p>	<p>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p> <p>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p> <p>③ (삭제)</p> <p>④ 상속세과세표준 신</p>	(좌동)

	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받음(유류분상속 재산은 제외)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	--	--	--

(*) 2017년 2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서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7)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완화

2023년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4대 특구’ 제도(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특구) 등을 도입하여 지방 도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 중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5항을 신설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을 받는 분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위 “(5) 상속인 요건” 중 “4) 대표이사 등 취임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는 곧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고 합니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5)까지(즉, 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라고 합니다)로 이전한 경우
- ②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50%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이는 “①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항에 따른 상시근무인원을 말합니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 “②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사항 기회발전특구 기업상속공제 사전요건 완화

<개정내용>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사항	기업상속공제 적용의 효과
<p>A사의 100%주주인 甲씨가 사망 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상속세 부담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하여 甲씨의 상속재산 및 甲씨가 대주주로 있는 A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	

상속재산의 현황

- A사 비상장주식 : 300억원
- 강남소재아파트 : 30억원
- 현금성자산 : 20억원

A사의 현황

- 최대주주 : 甲(100%)
- 기업영위기간 : 50년
- 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업
- 자산총액(세법상) : 500억
- 사업무관자산 : 50억원(*)
- (*) 대여금 20억원, 주식 30억원

기업상속공제 적용여부에 따른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업상속공제 미적용	기업상속공제 적용	비고
I. 상속재산	350억원	350억원	총 상속재산가액
II. 기업상속공제	-	270억원	(*)

III. 이외의 상속공제	10억원	10억원	배우자 및 일괄공제
IV. 상속세 과세표준	340억원	50억원	
V. 상속세 산출세액	165.4억원	20.4억원	5단계 초과누진세율
VI. 세액공제	4.962억원	0.612억원	신고세액공제
VII. 상속세 납부할세액	160.438억원	19.788억원	

(*1) 가업상속공제액 = Min[①, ②]=270억원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가액(300억원)×(1-10%(사업무관자산가액비율))=270억원

② 가업영위기간 30년 한도(500억원)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140.6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에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세액인 약 160억원은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및 현금성자산으로는 납부가 어려워 상속받은 A사 주식까지 처분하여 납부할 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세액인 약 20억원은 상속받은 현금성자산만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상속받은 A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② 가업용 자산을 유지하지 않거나 ③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④ 고용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사후요건을 위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률(현재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2016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2개 이상의 기업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법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그 법인의 주식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에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될 때 이하에서 살펴볼 사후관리 기간과 각 세부요건에 대해 많은 개정사항이 있었고 먼저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관리 내용	종전	개정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간	7년	5년	2022.12.31. 이전 상속분도 적용
고용유지 요건	매년 80% 또는 7년 평균 100%	5년 평균 90%	2022.12.31. 이전 상속분도 적용
자산유지 요건 (자산처분제한)	7년 이내 기업용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 처분제한	5년 이내 40% 이상 처분제한	2022.12.31. 이전 상속분도 적용

세부사항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제7조>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

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개정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은 아래와 같이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과 ‘② 이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부칙 7조 ②).
 -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 202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사후관리 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되지 않았을 것
 - ② ‘이 법 시행(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
2. 기업용자산 유지 요건 관련 사후관리 적용
 다만, 기업용자산 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기업용자산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여 기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았더라도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자산처분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7조 ② 단서).
3. 예외사항
 위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사후관리기준인 7년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규정인 5년 평균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정되는 경우>

사유	내용
1.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경우	①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 폐업하는 경우
2.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① 가업용 자산가액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상속재산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 법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 자산 ② 가업용 자산 중 처분(임대)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③ 처분비율 = ②/①
3.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최대주주에서 제외된 경우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③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4.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1) 가업종사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가업에 종사(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해야 합니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사실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상속인(또는 그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② 가업의 주된 업종(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둘 중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합니다)을 변경하는 경우.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즉, 중분류 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며, 업종변경에 대한 이

개정내용은 개정 후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더불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기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기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기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사항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유지요건 완화

<개정내용> 기업상속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허용하던 업종의 변경을 대분류 내에서의 변경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사항>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개정연혁

2013.12.31. 이전	2014.1.1. 이후	2016.2.5. 이후	2020.2.11. 이후	2024.2.29. 이후
세세분류가 동일해야 함 (재산-773, 2010.10.19.)	세세분류 → 세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세분류 매출액이 사업연도 말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경우	- 중분류 내에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분류 외 변경도 가능	- 대분류 내에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분류 외 변경도 가능

(2) 기업용 자산 유지요건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기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원래 7년 이내(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에 기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 1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했으나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될 때 5년 및 40% 기준으로 완화되었으며, 해당 사후관리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처분과 관련한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라도 2023년 1월 1일 현재 7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2월 11일 이후에는 자산처분비율을 산정할 때 여러 번에 걸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① 가업용 자산

여기서 가업용자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유형	가업용 자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	상속재산 중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② 가업용자산을 5년 이내에 40% 이상 처분했는지 여부

또한 가업용자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40%(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7년 이내에 20%, 5년 이내에는 10%) 이상 처분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총 가업용 자산가액 중 처분한 가업용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고, 처분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text{가업용자산 처분비율} = \frac{\text{처분(임대)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text{전체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③ 가업용자산을 5년 이내에 40% 이상 처분했을 때 추정방법

해당 가업용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40%(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7년 이내에 20%,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text{상속세 부과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times \text{자산처분비율} \times \text{기간별 추정률}$$

여기서 자산처분비율은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업용자산의 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나, 여러 번에 걸쳐 처분할 때에는 즉, 최초의 처분이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재차 재산을 처분하여 또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자산처분비율을 계산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됨으로써 기간별 추정률은 일률적으로

‘5년 미만 100%’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자산처분요건 위반여부의 구체적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제조업체를 2024년에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공장에 대하여 가업 상속공제를 받았습니다. - 가업용자산의 현황 및 상속개시일(2024년 4월 4일) 현재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1의 토지 및 건물가액 : 30억원 ㉡ 공장 2의 토지 및 건물가액 : 45억원 ㉢ 공장 3의 토지 및 건물가액 : 25억원 ① 1차 처분 : 2024년 12월 31일 위 가업용자산 중 ㉡의 토지 및 건물을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 공장 2의 토지 및 건물처분시 자산처분비율 : 45억원/100억원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내 자산의 40%를 초과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b. 추정할 경우 처분비율 : 최초 처분이므로 a와 동일 c.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공제액 100억원 × 자산처분비율 45% × 기간별추징률 100% = 45억원 ② 2차 처분 : 2026년 12월 31일 위 가업용자산 중 ㉢의 토지 및 건물을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 공장 3의 토지 및 건물처분시 자산처분비율 : 70억원(*)/100억원 =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상 처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초 처분가액 45억원과 재차 처분가액 25억원을 합한 누계액 기준 70억원으로 판단합니다. → 5년 내 자산의 40%를 초과하는 70%를 처분하였으므로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b. 재차 처분시 처분비율 : 25억원/100억원 = 25% c.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업상속공제액 100억원 × 자산처분비율 25% × 기간별추징률 100% = 25억원

다만,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후 처분한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 (*) 여기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증여-0388, 2023.05.08.).
-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

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 ⑥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는 가업의 영위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⑦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2020년 2월 1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사목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3) 지분유지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7년) 이상 상속받은 주식지분을 유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몰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1)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②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단위 : 주)

주주	관계	가업상속 후		유상증자 (100,000주)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상속인	50,000	50%	(*)30,000	80,000	40%
B	친족	25,000	25%	35,000	60,000	30%
C	기타	25,000	25%	35,000	60,000	30%
합계		100,000	100%	100,000	200,000	100%

(*) 원래 유상증자에 50,000주를 참여해야 하나 40%인 20,000주를 실권한 후 B, C주주에게 재배정한 후 상속인인 A의 지분율이 감소된 사례입니다.

- ③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

주가 안 되는 경우

(단위 : 주)

주주	관계	기업상속 후		유상증자 (100,000주)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상속인	40,000	40%	40,000	80,000	40%
B	친족	15,000	15%	-	15,000	7.5%
C	기타	45,000	45%	60,000	105,000	(*)52.5%
합계		100,000	100%	100,000	200,000	100%

(*) 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인 B의 실권 후 실권된 주식이 C에게 재배정된 후 최대주주가 A와 B에서 기타 주주인 C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2)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⑥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4)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과 총급여액 유지 요건의 선택 적용

가업승계의 조세지원은 단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과거 고용인원의 수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고용유지요건을, 임금상승이나 비경상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의 경우를 benchmarking하여 고용인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기업이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만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과 총급여액 유지 요건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의무와 관련된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제도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요건이 고용유지요건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과세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22년 12월 31일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사업연도 고용유지요건, 즉 매년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요건을 삭제하고 누적평균 고용유지요건만을 사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비율도 90%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히 봅니다.

1)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말부터 ① 7년간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고(각 사업연도 근로자 수 유지 요건), ② 7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고용인원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어야 하였습니다(누적평균 근로자 수 유지 요건).

- ① 각 사업연도 근로자 수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 이내에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삭제)
- ② 누적평균 근로자 수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간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즉, 이러한 근로자 수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기간별 추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이자상당액을 가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데 우선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고, 둘째 위 “① 각 사업연도 근로자 수 유지 요건(매년 80% 이상 사후관리)”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위 “② 누적평균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은 금액의 100%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자 수 유지요건’을 단순화하였으며 이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구분	종전 규정(2014.01.01.~2022.12.31.)	개정 규정(2023.01.01. 이후)
사후관리 대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2019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년 평균 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말(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일부터 5년 평균
기준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여기에 2019년 2월 12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상속 후 합병·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합리화하였습니다.

- ①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기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 분할에 따라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기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 ②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기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용어의 정리

정규직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기준고용인원

$$\frac{\text{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등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text{직전 사업연도 등 평균고용인원}} = \frac{\text{직전전 사업연도 등 평균고용인원}}{2}$$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고용인원

$$\frac{\text{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사업연도 등의 월수}}$$

2)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는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때 도입된 제도로써, 위에서 설명한 정규직 근로자의 인원수 유지요건 외에 납세의무자에게 총급여액 유지 기준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여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이 용이하도록 완화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급여액 유지 요건도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① 7년간 매년 말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이어야 하고(각 사업연도 총급여액 유지 요건), ②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 이상이어야 하였습니다(누적평균 총급여액 유지 요건).

① 각 사업연도 총급여액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 이내에 매년 지급한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삭제)

② 누적평균 총급여액 유지 요건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7년 이내에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기간별 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위 “① 각 사업연도 총급여액 유지 요건(매년 80% 이상 사후관리)”을 삭제하였으며, 위 “② 누적평균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은 금액의 100%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총급여액 유지요건’을 단순화하였으며 이 역시 이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준총급여액”이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을 말합니다.

또한 위의 “1) 근로자 수(고용인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서 설명한 합병·분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규정은 총급여액 유지 요건에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

한 급여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봅니다.

- ②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였던 것으로 봅니다.

용어의 정리

기준총급여액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등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등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평균

$$= \frac{\text{직전 사업연도 등 총급여액} + \text{직전 전 사업연도 등 총급여액}}{2}$$

총급여액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1)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 등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를 제외하지만,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등과 그 친족인 근로자만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1) 임금의 합계액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급여와 상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②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2)

(*2)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참고사항 총급여액 유지기준의 선택적용으로 인한 고용유지요건 정리

위 본문에서는 고용유지 요건과 총급여액유지 요건을 개정 전 내용부터 2022년 12월 31일 세법개정으로 인한 사항까지 모두 설명하였으나 “각사업연도 고용유지요건을 삭제하고 누적평균 고용유지요건을 90%로 완화”한 현재의 규정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음의 고용유지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근로자수 요건	총급여액 요건
내용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1) 수의 전체 평균(*2)이 기준고용인원(*3)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함)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4)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1)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
- (*2)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3)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4) 기준총급여액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평균

(5)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완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의 최대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5항을 신설하여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을 받는 분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후관리요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위 “(1) 가업종사요건” 중 “(1)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의 “① 상속인(또는 그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하지 않으며(이는 곧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제2호(위 “(1) 가업종사요건” 중 “(1)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의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고 합니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5)까지(즉, 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기회발전특구’라고 합니다)로 이전한 경우

②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50%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이는 “①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항에 따른 상시근무인원을 말합니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 “②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사항 기회발전특구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개정내용>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추정하지 아니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6) 사후요건 위반과 상속세 과세 및 이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요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 아래의 기간별 추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그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납부하기 이전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세무서장 등이 먼저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요건 유지기간별 추정률>

유지기간	기간별 추정률
5년 미만	100%
5년 이상	사후관리 종료

<사후요건 유지기간별 추정률 변동내역>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	100%	100%	90%	80%	70%
2022년 12월 31일 이전	100%	80%	<사후관리 종료>		
2023년 1월 1일 이후	100%	<사후관리 종료>			

(7) 이자상당액 가산

기업상속공제 후 5년간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이자상당액 = ① × ② × ③

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결정세액

② 사후관리 위반일수

③ 이자율(2024년 3월 22일 이후 1천분의 35 ÷ 365)

- 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결정세액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위에서 설명한 ‘사후요건 유지기간별 추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을 말합니다.
- ② 사후관리 위반일수
이는 당초 상속받은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이자율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365로 나눈 율을 말합니다(2024년 3월 22일 이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는 ‘1천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 보유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1-5. 탈세 또는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에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1)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행위(*2)(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의 행위에 한정합니다)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1) 탈세 :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고 합니다)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 회계부정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구분	효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형이 확정된 경우(공제를 적용하기 전)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당초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이자상당액과 함께 신고·납부

1-6. 가업상속공제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14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의 세대 간 이전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중 증가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세만 과세되고,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간주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었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이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었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의 취득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공제받았던 상속세가 추징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되 그에 따른 증가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가업상속공제적용률)(*1)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자산의 자산가액×(1-가업상속공제적용률)

$$(*1) \text{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frac{\text{가업상속공제금액}}{\text{가업상속재산가액}}$$

또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후관리기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2) 사후관리 기간 안에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었을 때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재산을 5년 이내에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의 추징문제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이 규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역시 그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현행 세법에서는 이미 신고 된 소득세를 수정하지 않고 상속세 추징시점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봅니다.

$$\text{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 (\text{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 \text{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times \text{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기간별 추징률}$$

- ①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이란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적용받은 가업상속공제적용율 + ㉡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 (1- 가업상속공제 적용율))”을 빼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합니다.
- 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후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합니다.
- ③ 사후관리 위반시 적용된 기간별 추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추징률	100%	사후관리 종료

1-7. 가업상속공제의 신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달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내에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법인 가업의 경우)
 - 주식평가내역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법인 가업의 경우)
 - 기타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지 여부 등을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원래 납부유예란 원칙적인 납부기한에 불구하고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인이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되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장치 역시 마련해 두었습니다.

2-1. 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과 대상세액

(1) 납부유예의 적용요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속인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상속받을 것

여기서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에서 살펴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속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㉟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㊸ 다음의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할 것

㊹ 상속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여기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규정을 준용하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최대주주 등이 해당기업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주식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상속인 요건(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㉑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납부유예가 가능한 세액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유예란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때 납부유예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증여(주식지분 감소 등) 및 상속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상속세액이 납부유예가 가능한 세액이 됩니다.

① 납부유예의 기간

거주자가 위 ‘(1)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

부유예를 허가받은 경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납부유예 대상세액

이 경우 납부유예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여기서 “기업상속 재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text{납부유예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 재산가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기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2.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1) 납부유예의 신청

구분	납부유예 신청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
납부고지서·납부통지서(연대납세의무자)에 의해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1) 신고기한 이내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 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1)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2 제6항 제1호(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할 자, 즉 그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의2 제6항 제2호(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합니다)까지 위 ①, ②, ③, ④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의 허가

구분	납부유예 신청기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개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1) 허가 여부 서면결정·통지 기한

“가업상속 납부유예 납부유예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①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통지 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6개월

②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다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③ 납부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2)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말합니다)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유예의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 그 납부유예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유예 허가 통지일 이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3. 담보의 제공

이처럼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1) 상속세의 납부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세액과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는 상속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개인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기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여기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

$$\text{납부유예된 세액 중 일부 납부할 세액} = \text{기업상속 시 납부유예된 세액} \times \text{기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한, 위의 산식에서 “기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기업용자산의 처분비율} = \frac{\text{기업용 자산 중 처분(임대)한 기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text{전체 기업용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②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여기서 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 ㉠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합니다.)
 - ㉡ 해당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
 -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여기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 = $A \times B \div C$
 A :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B : 감소한 지분율
 C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참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기업상속)**
- ⑫ 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④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정규직근로자”라고 합니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정규직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이와 같은 최대주주 등과 그 친족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급여 및 상여)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⑤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유예 후 납부사유 정리>

납부(또는 징수)사유(사후관리 위배사유)	납부할 세액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개인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세액 × 자산 처분비율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③ 상속받은 주식 등 지분 감소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지분 감소비율
④ 다음 ㉠, ㉡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⑤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다시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가업상속공제와의 납부사유 비교

납부(또는 징수) 사유, 즉 사후관리 위배사유 중 가업종사요건 위배는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업종변경에 따른 제한은 없으며, 자산유지요건을 위배하는 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하므로 법인가업까지도 상속재산 중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 가업상속공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요건의 경우 “5년 평균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인원 및 기준총급여액의 70%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의 90% 기준과 차이가 존재하며, 지분유지요건은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조건과 동일합니다.

(3)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 ‘(1) 상속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해도 추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개제, 사업장 이전 등으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후 처분한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사용하는 경우
 -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 ⑤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변경된 업종을 영위하는 가업의 영위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⑥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
 - ①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

습니다.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 ③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⑤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5. 상속세 납부사유 발생시 신고 납부 의무

상속세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위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의 납부사유”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신고를 할 때 「가업상속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6. 상속세 납부유예 후 상속세의 징수사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②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7. 다시 가업을 승계할 때 납부유예를 계속하여 적용

(1) 상속인의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다시 가업을 승계할 때 계속하여 납부유예 적용

위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의 납부사유”의 ‘③’(상속인의 법인 지분 감소) 또는 ‘⑤’(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때 : 상속인의 수증자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가업승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가업상속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준용하는 규정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이 중 제3항 제4호의 고유유지요건은 제외합니다)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3항 제3호 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 제1호(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봅니다.

참고사항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준용하는 규정 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2항(위 “2-3. 담보의 제공” 참조) 납부유예를 허가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위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의 납부사유” 참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증여의 경우 수증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개인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기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② 해당 상속인(증여의 경우 수증자)이 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상속개시일(증여의 경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모두 포함)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④ 해당 상속인(증여의 경우 수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4항(위 “2-5. 상속세 납부사유 발생시 신고 납부 의무” 참조)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5항(위 “2-6. 상속세 납부유예 후 상속세의 징수사유” 참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8.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위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의 납부사유”) 및 제5항(위 “2-6. 상속세 납부유예 후 상속세의 징수사유”)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 후 납부 및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①’의 금액에 ‘②’의 기간과 ‘③’의 율(다시 가업승계하거나 및 다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50%를 곱한 율을 적용합니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②의 기간 중에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 ① 결정한 상속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 ②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2-4. 상속세 납부유예 후 사후관리” 중 “(1) 상속세 납부사유” 또는 “2-6. 상속세 납부유예 후 상속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2024년 3월 22일 이후 1일 10만분의 35)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 방식의 비교>

- 가업상속공제방식 : 상속공제(한도 有) + 사후관리 →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 납부
- 납부유예 방식 : 납부유예(한도 無) + 완화된 사후관리 + 담보 → 전체 상속세 납부
 - ※ 업종유지 또는 고용유지 요건이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한도없이 적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지분유지 요건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납부유예된 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업상속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 상속 (*1)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것 (*2)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적용혜택		상속재산공제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상속세 금액 납부유예
		가업영위기간 한도액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없음)
사후관리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법인지분 유지는 납부유예기간 동안)
사후 관리	업종변경	대분류 내 허용	(없음)
	지분유지	5년 이내 지분 유지	5년 이내와 5년 후 구분하여 관리
	고용유지	5년간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90% 유지	5년간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70% 유지
사후관리기간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양도·상속·증여할 때 상속세 전부 납부 (재차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시 계속 납부유예 가능)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등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의 계획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하게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자녀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증여재산가액(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00억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에서 10억원(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세율로 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로 5년(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7년) 동안 증여받은 지분을 유지하며 승계 받은 가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시한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월 1일 세법을 개정할 때 삭제되었으므로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가업을 2인 이상 승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 하였으며, 이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

요건	•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적용 불가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 20%)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3-1.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업자 지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기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5332, 2013.02.06., 국승, 완료)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이 증여받는 경우와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이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100억원, 2014년 12월 31일 이전은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사업무관자산가액}}{\text{법인의 총자산가액}} \right)$$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업력의 고려없이 일괄하여 100억원을 한도로 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금액을 증여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이 경우 60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일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 10년간 5천만원)를 적용 후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증여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중 증여받은 주식가액 전부로 계산하였지만, 증여재산 중 가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가업자산상당액”으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1. 기업상속공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종전에는 과세표준 6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도별 과세특례적용 대상 금액과 공제금액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이하에서 관련 내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현행법령상 적용되는 과세특례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금액 및 공제금액·증여세율 개정연혁>

구분	2008년~ 2014년	2015년~ 2022년	2023년 1월 1일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증여 가액 한도	30억원	100억원	10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좌동)
			20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 금액	5억원	5억원	10억원		(좌동)
증여 세율	과세표준에 관계없이10%	과표 30억원 이하 : 10% 과표 30억원 초과 : 20%	과표 60억원 이하 : 10% 과표 60억원 초과 : 20%		과표 120억원 이하 : 10% 과표 120억원 초과 : 20%

개정사항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저율과세 구간 상향조정

<개정내용> 종전에는 기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60억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낮은 세율의 과 세구간 적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세율	낮은 세율(10%)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높은 세율(20%)	과세표준 60억원 초과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2인 이상이 증여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합니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 니다.

-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동시 증여) : 1인이 모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 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순차 증여) :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3-2.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요건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그 기업의 주식(최대 600억 원 을 한도로 합니다)을 자녀가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것
2. 증여자 요건을 충족할 것(60세 이상, 10년 이상 기업 영위)
3. 수증자 요건을 충족할 것(단독 승계 뿐 아니라 2인 이상 기업승계도 가능)

(1)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은 앞에서 설명한 ‘1.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합니다.

기업상속공제의 기업이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이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합니다.

-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증여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합니다)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종전에 최대주주 등 중 1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증여자의 기업경영기간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증여일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경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의 소유를 넘어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기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업의 경영기간 중 업종유지 의무를 판단할 때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과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이 최근에 공개되었습니다. 즉, 과세당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기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서면-2022-상속증여-2304, 2022.07.04. 참조) 사실상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기업을 경영할 것”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지분 요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즉, 최대주주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40%(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10년의 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40%(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즉,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상속공제와 같이 주식보유 요건은 증여일 전 증여자의 기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10년 이상 기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최대주주지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심층연구

10년 이상 보유주식에 한하여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조세심판원은 기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동 과세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대법원·서울행정법원·대구고등법원에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이라고 하여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과세특례가 가능한 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등의 입장

2022년 1월 5일 전 결정·경정분에 대해서도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1.10.15.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2019.05.31.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기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음.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 조세심판원의 입장

증여자가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판단하였음

· 조세심판원2020서2075, 2020.11.10.

증여자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자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여 언제든지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2020중2109, 2021.02.17.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기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증여 당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2020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이라고 최종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국패, 원료).
- 그 이유에 대해 '기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기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일 바로 전날 증여자인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기업'의 승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 이에 과세당국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여 2022년 1월 5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통해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서는 종전에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의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1차 과세특례)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가 다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2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이란 종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가업 즉, 최초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을 증여 받은 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승계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5)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해야 하며, 그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는 재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 수증자 요건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2015년 2월 3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로서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의 의미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수증자의 결혼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증여당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상향식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했을 때 가업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조부모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하향식 승계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수증자 1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 단서 개정), 이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1인이 승계하는 경우와 총 세 부담이 동일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2항 신설).

조문대비표 공동수증 허용과 관련한 수증자 요건 개정	
종전	개정
· 제30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다만, 기업의 승계 후 기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 하는 자(기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략) 다만, 기업의 승계 후 기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곧 증여세 신고납부 시점에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 상속시점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구조 때문에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기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및 적용 요건 등은 일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수증허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기업상속공제 규정이 2016년 2월 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공동상속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도 이에 대응되게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3-3.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요건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추정>

추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재산을 취득할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추정대상금액	·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 추정대상금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일 22/100,000

세부사항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과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된 내용 요약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일정기간 기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내용	종전	개정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간	7년	5년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도 적용
대표이사 취임기한	5년	3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만 적용
대표이사직 유지기간	7년	5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만 적용

※ 사후관리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5조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 2022년 12월 31일 세법개정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위의 부칙(적용례 및 경과조치)을 해석해 보면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아 사후관리 중인 자'와 '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아 사후관리 중인 자'란?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 2023년 1월 1일 현재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종전의 사후관리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

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란?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자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반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7년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고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재산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을 말합니다.

(2) 가업종사 요건

수증자는 기업승계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2022년 1월 1일 이전은 7년, 2014년 12월 31일 이전은 10년이며, 이하 '5년'이라고 합니다) 이상 가업에 종사(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수증자가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수증자가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
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②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24년 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
기 전까지는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에서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열거하였으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
하는 대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적용
받게 되어 2024년 2월 29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는(즉, 종전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즉, 중분류 간)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와 평가심의위원회
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
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해당 기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이 때
기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개정사항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유지요건 완화
 <개정내용> 기업승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허용하던 업종의 변경을 대분류 내
 에서의 변경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기업의 주
 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기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사항> 주업종 변경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개정연혁

2014.2.21.~ 2016.2.4.	2016.2.5.~ 2020.2.10.	2020.2.11. 이후	2024.2.29. 이후
세분류 내에서 다 른 업종으로 변경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증 여일 현재 세분류 매출액이 사업 연도 말 전체 매출의 30% 이상 인 경우	• 중분류 내에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중분류 외 변경도 가능	• 대분류 내에서 변경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분류 외 변경도 가능

2)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사항	대표이사 취임 후 가업을 완전히 승계하는 것의 의미 및 해석
<p>위 사후관리 중 “(1) 가업의 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와 “(2) 가업종사 요건”은 가업을 승계한 후 후계자의 경영능력 미비로 인한 CEO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사후관리에서 최소한의 경영수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후관리 기간인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p> <p>이렇게 “가업의 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완전히 승계한 후 2년 이상 대표이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7년까지 대표이사 유지”하도록 한 요건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하도록 하면서, 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대표이사 취임기한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종전 규정인 5년의 기한을 주면서 대표이사 유지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5년으로 유지하면서 대표이사 직의 유지는 개정 법률을 적용해 5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이 경우에는 종전처럼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까지 대표이사 유지”로 가업의 승계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이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p>	

(3) 지분유지요건

수증자는 가업승계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증여받은 주식 지분을 유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실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각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에서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란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②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예외사항 및 정당한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에서의 예외사항과 및 제4항에서의 사후관리를 위반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정하지 않는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③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실권하여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그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④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지만,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4) 사후요건 위반과 증여세 과세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이자상당액} = \text{①} \times \text{②} \times \text{③}$$

- ① 사후관리 위반에 의하여 결정한 증여세액
- ② 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일까지의 기간
- ③ 이자율 : 1일 10만분의 22(연 8.030%)

- ① 사후관리 위반에 의하여 결정한 증여세액
여기서 ‘결정한 증여세액’이라 함은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과세특례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② 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일까지의 기간
이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이자율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현재 1일 10만분의 22)을 말합니다. 다만,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2022년 2월 15일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1일 1만분의 25)에 따르고, 2022년 2월 15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정 규정(1일 10만분의 22)에 따릅니다.

(5) 사후관리를 위반했을 때 신고·납부의무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위에서 설명한 사후관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사후관리위반에 대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3-4. 탈세 또는 회계부정 기업인의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취지 등이 유사한 병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조항이 먼저 신설되었으며, 이에 발맞추어 2023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조세법에 대해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부모 또는 거주자)가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1항(*1)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행위(*2)(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인 증여일 후 5년까지의 행위에 한정합니다)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1) 탈세 : 포탈세액 및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고 합니다)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 회계부정 :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구분	효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증여자(부모) 또는 수증자(거주자)의 형이 확정된 경우(특례를 적용하기 전)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증여자(부모) 또는 수증자(거주자)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특례를 적용한 후)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당초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이자상당액과 함께 신고·납부

참고사항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후 조세포탈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상당액(조특령 27조의6 ⑫) = ㉠ 결정한 증여세액 × ㉡ 추정일수 × ㉢

- ㉠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 ㉡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형의 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 1일 22/100,000

개정사항 조세법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개정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 동안 기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기업승계·영농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5.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기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그 밖에 기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1848, 2017.07.28.)

3-6.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1)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및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미차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기업승계 주식 등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그러나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전액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기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text{상속세 산출세액} - \text{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 = \begin{cases} (+) \text{ 상속세 납부 } \bigcirc \\ (-) \text{ 증여세 환급 } \times \end{cases}$$

(3) 신고세액공제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은 가능하지만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4) 연부연납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기간이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과는 달리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2015년 1월 1일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현재)
연부연납 적용 배제	5년간 연부연납 허용	15년간 연부연납 허용

(5) 가업승계 주주가액 외의 일반 증여재산가액과의 합산과세 배제

일반증여의 경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되는 금액 및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고, 만일 이를 합산과세 한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자가 같은 경우 수증자인 1거주자가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같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장남에게는 가업승계주식을 증여하고 차남에게는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등 수증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7)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이 상장 등 증여이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추가적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의 가액과 추가적인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증여에 대한 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합산배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8)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상속에 해당할 것. 다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으며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위 ‘①’에서 말하는 가업의 상속에 해당해야 하는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3월 28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상속이 개시될 때에도 상속시점이 아닌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라면 추후 기업의 규모가 커져 상속개시시점에 가업의 규모를 벗어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보유 중인 주식 등의 전부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미 주식 등의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특례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과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해서 ‘최대주주 등 지분율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p>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적용받게 되면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의 방법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 또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이월된 양도소득세액을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p> <p>하지만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전환하면 당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과세이연되는 이자상당액만큼 절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하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하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 보유할 때보다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법인세 과세가 된 후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실현하더라도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결코 절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p>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비교>

구분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사 전 요 건	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주식만 적용대상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기업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건설업 등 영위 개인·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건설업 등 영위 법인
	기업경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 개인·법인 가업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 법인 가업 경영
	납부능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능력요건 있음 (19년 1월 1일 이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율 40%이상 보유(상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율 40%이상 보유(상장 20%)

	피상속인/ 증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 : 거주자, 최대주주 중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 거주자, 최대주주 중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 나이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 나이 60세 이상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기간 중 50%이상, 또는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등 재직,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 등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상속인/ 수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 18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가업종사해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의 배우자 가능(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증여 후 3년 내 취임요건 충족시)
사 후 요 건	가업승계·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상속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내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등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 후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5년간 대표이사 등 유지 • 5년간 주된 업종 유지(대분류 내 업종 변경 가능) • 1년 이상 가업 휴업·폐업 등 無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 5년간 주된 업종 유지(대분류 내 업종 변경 가능) • 1년 이상 가업 휴업·폐업 등 無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가업용자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자산 5년간 60% 유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지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받은 지분 5년간 유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받은 지분 5년간 유지 ※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근로자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 대비 5년간 90%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요건 위반과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추징 •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세액 경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추징 •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액의 경감 없음 	

4. 기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원래 납부유예란 원칙적인 납부기한에 불구하고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증자가 승계받은 기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의 납부 부담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저율의 증여세 과세특례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그 주식 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 하되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4-1. 증여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과 대상세액

(1) 납부유예의 적용요건

‘기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일 것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합니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합니다)을 증여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계 대상 주식 등이 없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에 대해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준용하는지에 관해서 법령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18.)”에 따르면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자 요건 [최대주주 등이 기업법인의 40%(상장주식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과 수증자 요건(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

니다.

- ②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지 않을 것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2) 납부유예가 가능한 세액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때 납부유예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증여(주식지분 감소) 및 상속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부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이 차지하는 증여세액이 납부유예가 가능한 세액이 됩니다.

① 납부유예의 기간

거주자가 위 ‘(1)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경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납부유예 대상세액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범위)을 말하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봅니다.

$$\text{납부유예 대상세액} =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자산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2.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1) 납부유예의 신청

구분	납부유예 신청기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
납부고지서·납부통지서(연대납세의무자)에 의해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1) 신고기한 이내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6항 제1호(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거주자가 주식을 증여하여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할 자, 즉 그 수증자가 다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6항 제2호(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거주자가 사망하여 증여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합니다)까지 위 ①, ②, ③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의 허가

구분	납부유예 신청기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고지서에 의해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	

1) 허가 여부 서면결정·통지 기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①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통지 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6개월

②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6항 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거주자가 사망하여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할 자가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는 9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③ 납부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2)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말합니다)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유예의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 그 납부유예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납부유예 허가 통지일 이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3. 담보의 제공

이처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1) 증여세의 납부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는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 ①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여기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
 - ㉠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합니다)
 -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
 -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여기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text{세액} = A \times B \div C$$

A : 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받은 세액

B : 감소한 지분율

C : 증여일 현재 지분율

참고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⑦ 법 제30조의6 제3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율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⑦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이하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정규직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이와 같은 최대주주 등과 그 친족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급여 및 상여)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7항 및 제18항을 준용합니다.

- ④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유예 후 납부사유 정리>

납부(징수) 사유		납부(징수) 할 세액
① 해당 거주자가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증여받은 주식등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증여일부터 5년 후	납부유예된 세액 × 지분감소비율
③ 증여일부터 5년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의 5년간 전체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④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2)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위 ‘(1) 증여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정당한 사유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

-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②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④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⑤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4-5. 증여세 납부사유 발생시 신고 납부 의무

증여세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위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6. 증여세 납부유예 후 증여세의 징수사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항에 따른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까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7. 다시 기업을 승계할 때 납부유예를 계속하여 적용

(1) 수증자의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다시 기업을 승계할 때 계속하여 납부유예 적용

위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의 ‘②’(수증자의 지분 감소) 또는 ‘④’(수증자의 사망)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사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때 : 수증자의 수증자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기업승계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 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다시 기업상속하는 경우”라고 합니다)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준용하는 규정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제3항 제3호의 고용유지요건은 제외합니다)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 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 제2호(수증자의 사망)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참고사항	계속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경우 준용하는 규정 정리
	<p>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2항(위 “4-3. 담보의 제공” 참조) 납부유예를 허가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3항(위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 참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① 해당 거주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지분이 감소한 경우(증여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모두 포함)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③ 해당 거주자(상속의 경우 상속인)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4항(위 “4-5. 증여세 납부사유 발생시 신고 납부 의무” 참조)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5항(위 “4-6. 증여세 납부유예 후 증여세의 징수사유” 참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4-8.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가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7 제3항(위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 및 제5항(위 “4-6. 증여세 납부유예 후 증여세의 징수사유”)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 후 납부 및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①’의 금액에 ‘②’의 기간과 ‘③’의 율(다시 가업승계하거나 및 가업상속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50%를 곱한 율을 적용합니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②의 기간 중에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 ① 결정한 증여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3항 각 호에 따른 증여세액(사후관리 위반 사유별 세액)
- ②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4-4.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의 사후관리” 중 “(1) 증여세의 납부사유” 또는 “4-6. 증여세 납부유예 후 증여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2024년 3월 22일 이후 1일 10만분의 35)

4-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봅니다.

- ① 증여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②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상속세 납부의무)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 ③ 주식 등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

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합산하여 과세할 때에는 일반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 ④ 주식 등은 상속공제적용의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계산할 때 납부유예 적용대상 주식 등은 사전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게 됩니다.
-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⑥ 증여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때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방식의 비교>

- 증여세 과세특례방식 : 증여특례(한도 有) + 사후관리 → 가업상속재산으로 취급
- 납부유예 방식 : 납부유예(한도 無) + 완화된 사후관리 + 담보 → 재차 가업승계 가능
 - ※ 업종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한도 없이 적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납부유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반면, 고용유지 요건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후 일반세율 적용)를 유예함을 유의하여 적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구분	증여세 과세특례 방식	증여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	중소·중견(매출액 5천억원 미만)기업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 상속 (*1)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을 것 (*2)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 배제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함

적용혜택	저율(10%-20%)로 증여세 과세 (*) 상속시 기간제한 없이 상속세 정산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금액 납부유예 (*1) 상속시 기간제한 없이 상속세 정산 (*2) 재차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시 계속 납부유예 가능	
적용혜택	가업영위기간 한도액 10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없음)	
사후 관리	업종 변경	대분류 내 허용	(없음)
	지분 유지	5년 이내 지분 유지	5년 이내와 5년 후 구분하여 관리
	고용 유지	(없음)	5년간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70% 유지
납부의무 소멸여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정산할 때 소멸함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멸하지 않음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뿐 아니라 모든 세목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속 및 증여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동산 등 즉시 현금화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금의 일시납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거액의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시 기한유예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는 가업상속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외의 일반 상

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의 최대 허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증여세는 5년으로 유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 2023년 12월 31일 세법개정시에는 증여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재산과는 달리 15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연부연납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부연납의 요건

연부연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액요건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신청요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연부연납 신청기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때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의해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상의 납부기한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

참고사항

연부연납의 신청인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23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공동상속인의 연부연납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담보제공 요건

연부연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납세담보(「국세징수법」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를 제공하면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

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① 금전
- ②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
-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 ④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4) 기업상속 및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요건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연부연납 특례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납세자의 선택 또는 기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비록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대상금액 및 연부연납의 기간을 일반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와 다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 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합니다)을 상속받은 경우
- ②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위 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것
 - a. 30% 이상의 기간
 - b.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c.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a.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b.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2) 연부연납의 허가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구분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통지 기한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월 이내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청한 경우	상속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신청한 경우	상속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자동허가)
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봄

(3) 허가여부 통지 전 가산세 등의 면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및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로서 각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에 한정합니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부연납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하여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을 징수합니다.

(4) 연부연납의 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10년, 증여재산의 경우 거치기간 없이 5년의 기간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 등의 경우 최장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최장 15년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 등’이란 위에서 설명한 ‘(1) 연부연납의 요건’ 중 ‘4) 가업상속 및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세목		연부연납기간
증여세	일반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5년 이내
상속세	일반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0년(2021년 이전 5년) 이내
	가업상속재산 등의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20년 또는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거치 10년

1) 일반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 등의 재산이 아닌 재산(일반재산)만 있는 경우의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재산 중 연부연납 특례대상 가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상속재산 등의 비율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20년(또는 10년 거치 10년)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① 가업상속재산 또는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제외합니다)의 가액 중 가업상속재산(사립유치원의 교지, 실습지, 교사 등을 포함합니다)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을 연부연납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② 가업상속재산 또는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의 가액이 50%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등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에서 납세의 무자가 신청한 기간을 연부연납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금 더 과거 개정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2017년 12월 19일 세법개정으로 인해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최대 15년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을 적용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는 물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연부연납 특례의 활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도 완화하여 ‘가업상속’ 뿐 아니라 가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역시 연부연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 등에 대해 20년(또는 10년 거치 10년)의 기간’ 범위에서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합니다) 중 기업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frac{\text{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text{상속세 납부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text{기업상속공제액}}$$

위 산식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상속받거나 받을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2021년 2월 17일 이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함]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이란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상속추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

참고로 위 산식에 따라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연부연납이 가능하게 된 세액을 계산할 경우 그 금액이 업력에 따른 한도액(최대 600억원) 이내이고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최소비율’이라는 가정 하에 분자가 ‘0’ 또는 ‘0’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상속재산이 포함된 연부연납에 대한 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기업상속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매우 높아 기업상속공제가 부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계산구조를 설계한 이유는 여러 차례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업상속공제액 및 공제율이 과거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역시 현저히 감소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렇듯 거액의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에 기업상속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최대 20년의 연부연납 특례기간의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이 기업상속재산 이외의 일반상속재산에까지 미치게 되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상식 기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모두에 대해 무조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상속공제 후 연부연납 특례 요건을 갖춘 잔여기업재산에 대해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참고사항> 기업상속재산 연부연납기간의 개정연혁

구분	2004년 1월 1일 이후	2008년 1월 1일 이후	2018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50% 미만	5년 분할납부	2년 거치 5년 분할납부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이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이내
기업상속재산 등(*)의 비율 50% 이상	15년 분할납부	3년 거치 12년 분할납부	20년 또는 5년 거치 15년 이내	

(*) 기업상속재산 등 : 구체적으로 연부연납 특례대상이 되는 ‘기업상속재산’이란 ①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재산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을 포함합니다.

3)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①과 ②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② ‘①’ 외의 일반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600억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액의 최대금액은 106억원으로 개정 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최대금액인 16억원보다 약 90원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세법을 개정하여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은 이외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달리 15년으로 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과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원활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연부연납허가를 받는 자가 연부연납기간을 단축(5년 → 3년 이내 일시 납부)하거나 연장(3년 → 5년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기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재산46014-26, 1998.04.03.).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징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개정사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연부연납기간 확대

<개정내용>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의 범위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24년 1월 1일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연부연납에 의해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 증여재산의 경우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 후 15년 이내로 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을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 후 5년 이내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기간을 각각 15년 또는 5년으로 허가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총액의 16/1 또는 1/6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text{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2) 일반상속재산만 있는 경우의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 후 10년 이내로 하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으로 허가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총액의 1/11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text{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 \text{연부연납 납부세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3) 가업상속재산 등이 포함된 상속세의 경우

①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의 계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과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으로 구분해 각각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과 매년 분할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허가 후 10년 이내로 하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으로 허가받은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총액의 1/11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text{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 = \left\{ \frac{\text{상속세}}{\text{납부세액}} - \left(\frac{\text{상속세}}{\text{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 기업상속재산 등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기업상속재산 등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1/21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거치 10년 이내의 기간(또는 10년 거치 10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10년)에 매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의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②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할 세액의 계산

-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하며 연부연납기간 중에 매년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년의 기간을 허가받은 경우라면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1/11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text{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 = \left\{ \frac{\text{상속세}}{\text{납부세액}} - \left(\frac{\text{상속세}}{\text{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 기업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간(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기간 중에 매년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 = \left\{ \frac{\text{상속세}}{\text{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기업상속공제액}} \right\}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 + 1)}$$

참고사항 **연부연납세액의 물납가능여부**

과거에는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정으로 인해 2013년 2월 15일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은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6) 연부연납의 취소와 변경 및 세액의 징수

1) 연부연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및 세액의 징수 사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①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④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와 동일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각 목의 예외사유, 즉 ‘기업상속재산의 수용, 기업용 자산이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의 사망 등’ 가업상속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각 목의 예외사유, 즉 ‘상속인의 사망,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다목 및 라목, 즉 ‘상속인의 사망,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로 인해 가업상속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및 세액의 징수방법

연부연납 허가 후 위에서 설명한 ‘연부연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및 세액의 징수 사유’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당초 허가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 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위 ‘1)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중 ‘④’와 ‘⑤’(이하 ‘기업상속 취소사유 등’이라고 함)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기업상속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를 취소하고 허가일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해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합니다. 이 경우 그 연부연납 금액은 일반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금액[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곧, ‘기업상속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특례는 취소하게 되지만, 최소한 일반적인 연부연납기간인 10년의 연부연납은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허가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상속 취소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인 8년 동안의 연부연납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일부상속인이 미납한 경우 미납상속인과 나머지 상속인의 구분 징수 :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1) 연부연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의 ①(연부연납세액의 미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
 - 미납자(취소 및 징수) :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미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합니다. 이 경우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나머지 납세의무자(변경) :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부터 위 “1) 연부연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의 ①(연부연납세액의 미납)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합니다.
- ③ 위 ‘①’과 ‘②’의 사유 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전액 일시에 징수합니다.

참고사항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정세액 신고시 연부연납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258 [법규과-2279], 2023.09.05.)

<질의내용>

- 2019.11.16. 부친의 사망으로 주식 000억원을 상속받고, 기업상속공제액 000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함
* 상속세 신고분은 상증법§76 및 77에 따라 기결정·통지하였음을 전제함
-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기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할 예정
- 기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정세액에 대해 같은 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정세액 신고시 해당 추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앞에서 설명한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① 첫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금

$$\text{첫 회분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 \frac{\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text{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times \frac{9.589}{100,000}$$

② 그 이후(2회분부터)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

$$\text{그 이후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 \frac{\text{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text{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text{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times \frac{9.589}{100,000}$$

여기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행령 개정 전에는 아래의 이자율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

을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개정 후에는 시중금리변동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신청분부터는 연부연납 허가 후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10일 이전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일 현재 이자율이 적용 가능하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2023년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3년 2월 28일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이후
4.931/ 100,000 (연 1.8%)	5.753/ 100,000 (연 2.1%)	4.931/ 100,000 (연 1.8%)	3.288/ 100,000 (연 1.2%)	7.945/ 100,000 (연 2.9%)	9.589/ 100,000 (연 3.5%)

참고사항 **개정규정의 부칙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구체적인 적용**

1. 2023년 2월 28일 이후 납부분

- ①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개정, 상증령 부칙 9①).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7일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2023년 2월 28일 이후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개정, 상증령 부칙 9②).
- ③ 위 ②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개정, 상증령 부칙 9③).

2. 2020년 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7일 신청분

- ①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0년 2월 10일 이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대통령령 제30391호, 2020.02.11. 개정, 상증령 부칙 12).
- ② 2020년 2월 10일 이전에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기획재정부령 제780호, 2020.03.13. 개정, 상증칙 부칙 5조 1호).
- ③ 위 ②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합니다(기획재정부령 제780호, 2020.03.13. 개정, 상증칙 부칙 5조 2호).

(8)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1) 연부연납의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2) 연부연납의 허가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관세청 -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대형산불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수) 밝혔다.

□ 이번 지원은 ①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②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③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④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 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 관세법 100조: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조④: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②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 ③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 ④ (특별통관 지원) 대형산불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대형산불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전국세관 상담 창구

특별지원	관세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① 세정지원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	042-481-7870
		박경석 사무관	042-481-7871
② 관세조사 유예	기업심사과	신재형 과장	042-481-7980
		문경환 사무관	042-481-7656
③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과	마순덕 과장	042-481-3220
		김무단이 사무관	042-481-3213
④ 특별통관 지원	통관물류정책과	박천정 과장	042-481-7810
		조현상 사무관	042-481-7851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환급 지원		통관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공항	심사정보과	032-722-4353	심사정보과	032-722-4361	수출입물류과	032-722-4135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통관지원과	02-6930-4926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수출입물류과	032-452-3207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통관지원과	031-547-3940
천안	"	041-640-2324	"	041-640-2329	통관지원과	031-8085-3862
청주	"	043-717-5733	"	043-717-5733	통관지원과	02-510-1112
대전	"	042-717-2258	"	042-717-2264	통관지원과	031-596-2061
속초	"	033-820-2147	"	033-820-2147	통관지원과	041-640-2361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	043-717-5715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	042-717-2221
과주	-	031-934-2816	-	031-934-2805	-	033-820-2121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통관총괄과	033-539-2660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통관지원과	031-697-2592
용당	"	051-793-7123	"	051-793-7124	통관지원과	031-934-2610
양산	"	055-783-7328	"	055-783-7325	통관지원과	051-620-6112
창원	"	055-210-7633	"	055-210-7632	통관지원과	051-899-7231
마산	"	055-981-7035	"	055-981-7035	통관지원과	051-793-7131
경남남부	"	055-639-7534	"	055-639-7534	통관지원과	055-783-7340
경남서부	-	055-750-7907	-	055-750-7912	-	055-210-7611
인천본부	심사정보과	032-452-3049	심사정보과	032-452-3325	수출입물류과	055-981-7020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통관지원과	055-639-7515
안산	"	031-8085-3823	"	031-8085-3831	통관지원과	055-750-7901
대구본부	납세지원과	053-230-5314	납세지원과	053-230-5312	통관지원과	053-230-5210
울산	조사심사과	052-278-2265	조사심사과	052-278-2287	통관지원과	052-278-2255
구미	"	054-469-5639	"	054-469-5632	통관지원과	054-469-5611
포항	"	054-720-5733	"	054-720-5732	통관지원과	054-720-5711
광주본부	심사과	062-975-8064	심사과	062-975-8063	통관지원과	062-975-8041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통관지원과	061-797-8411
목포	"	061-460-8544	"	061-460-8542	통관지원과	061-460-8511
여수	"	061-660-8673	"	061-660-8673	통관지원과	061-660-8611
군산	"	063-730-8751	"	063-730-8745	통관지원과	063-730-8711
제주	"	064-797-8853	"	064-797-8893	통관지원과	064-797-8811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	063-710-8953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통관총괄과	031-8054-702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및 적용범위

- 국세청 -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1.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보고

- 현재 공익법인이 적용하는 회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하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상 회계원칙도 일부에 불과하며,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좁아 일부 공익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다.
 - 회계원칙은 발생주의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며,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학술 및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에 대한 공시의무 사항만을 규정해 놓아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회계기준(제50조의4)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신설('16.12.20)된 조문이다.

- 비영리조직에서는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이익'과 비교할 만한 단일 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익 외의 다른 성과지표가 요구된다.
 - 자원의 유입과 유출의 성격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의 희생과 성취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게 된다.

- 특히, 비영리조직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기보다는 법적인 규제와 자원의 제공자에 의해 부여된 제한이 비영리조직의 주요한 통제수단이 되며, 공식적인 예산과 자원 사용에 대한 기증자의 제한과 같은 통제수단이 비영리조직의 경영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며, 비영리조직의 회계시스템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공익법인 재무보고의 목적은 통일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원제공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공익법인이 제공하는 공익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기부자 및 정부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내부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
 - 공익법인 회계시스템은 관리자들에게 공익법인의 지속가능한 사업수행능력과 공익목적 사업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
 -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및 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 다수의 공익법인은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무신고의 목적 등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단일실체의 종합적인 재무보고가 아닌 사업부별 재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만 제공하고 있어 법인 전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 회계단위를 구분한 재무제표는 관리목적으로 효율적인 반면, 일반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공익법인의 회계단위를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공익법인별로 회계단위를 상이하게 구분한 재무제표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표 I-1> 주요 구분회계 현황

구 분		관련 법규	규정 내용
설립근거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6조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학교	「사립학교법」 제29조	•법인회계 •학교회계
	의료기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제3조	•법인회계 •병원회계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고 작성해야 한다.(제3조)
 - 관리목적이 아닌 일반재무보고목적 하에서는 회계단위를 구분하지 않은 통합된 보고실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공익법인 전체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용이하여 보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일반영리기업에서는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단위를 구분한 부문별 정보는 병행하여 보고되며 상세내역은 주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통합해야 한다.
 - 지점, 지부, 사업장 등 본점 외 조직이어도 하나의 공익법인이라면 통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판단 기준으로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법인등록번호 이외에 하나의 보고실체라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 공익법인을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익법인 재무제표를 다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0조제2항, 제23조제2항)
 - 공익법인의 특성상 공익목적사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기부금 수익이나 보조금 수익을 공익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부자나 감독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간의 자산 이전, 기타사업을 통한 자원마련 파악 등 공익법인의 자금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공익목적사업구분과 기타사업부문의 구분은 공익법인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 공익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활동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야 하며, 이때 각 사업활동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인 건물의 임대사업을 통해 장학금의 자원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사업은 공익목적사업부문, 임대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한다.

3.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 상당수의 공익법인은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단식부기 방식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사용상의 편리함으로 인해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한다.
 - 현금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단식부기 방식은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자산의 증감내역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형자산 매매 등으로 인해 법인의 손익이 왜곡될 수 있으며, 정확한 손익 산출과 그 증감 원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검증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거나, 거래가 빈번해 질 경우 공익법인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지 않는 등 재무상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제 4조)
 -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 미지급이자비용, 미지급보험료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제적효익의 유출입이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 현금주의 회계원칙에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반면,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공익법인의 과거의 성과평가와 미래의 성과예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복식부기 방식은 재무상태 또는 재무성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차변

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함에 따라 차대변이 균형(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은 값)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는 자기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또한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종류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제5조)
 - 재무제표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필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와 상이하다.
 - 공익법인은 운영성과표를 사용하여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대신한다.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익목적사업의 활동 내역을 사업수행비용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는 운영성과표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에 비해 적합하다.
 - 재무제표 구성항목 중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제외된다.
 - 공익법인의 순자산은 주주간의 거래가 없어 일반기업에 비해 단순하여, 순자산에 대한 변동내역을 필수 재무제표가 아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공익법인은 수지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자 현금흐름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5.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며,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제6조)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양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식, 순자산의 구분, 수익·비용의 인식과 분류, 자산·부채의 평가 및 주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다수의 공익법인은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기에, 실무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상장기업들이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많은 전환비용과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인 공익법인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현행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체제로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 공익법인 중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발생주의·복식부기)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적용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 기관에 포함되는 「공익법인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6. 공익법인회계기준 구성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기본원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총 5개의 장과 43개의 조문, 부칙과 별지 서식으로 구성된다.

<표 1-2>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보고실체)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5조(재무제표)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12조(유동자산)
	제13조(투자자산)
	제14조(유형자산)
	제15조(무형자산)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제17조(유동부채)
	제18조(비유동부채)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20조(기본순자산)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및 적용범위

구 분	내 용
	제21조(보통순자산)
	제22조(순자산조정)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제25조(사업수익)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제27조(사업비용)
	제28조(사업외수익)
	제29조(사업외비용)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제32조(법인세비용)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제5장 주식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제40조(주식의 정의)
	제41조(필수적 주식기재사항)
	제42조(선택적 주식기재사항)
부칙	제43조(주식기재방법)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별지 제1호 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II.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의 법인*을 의미한다.

*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가. 「법인세법」 -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제1조제2호)이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 또는 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예)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등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

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성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성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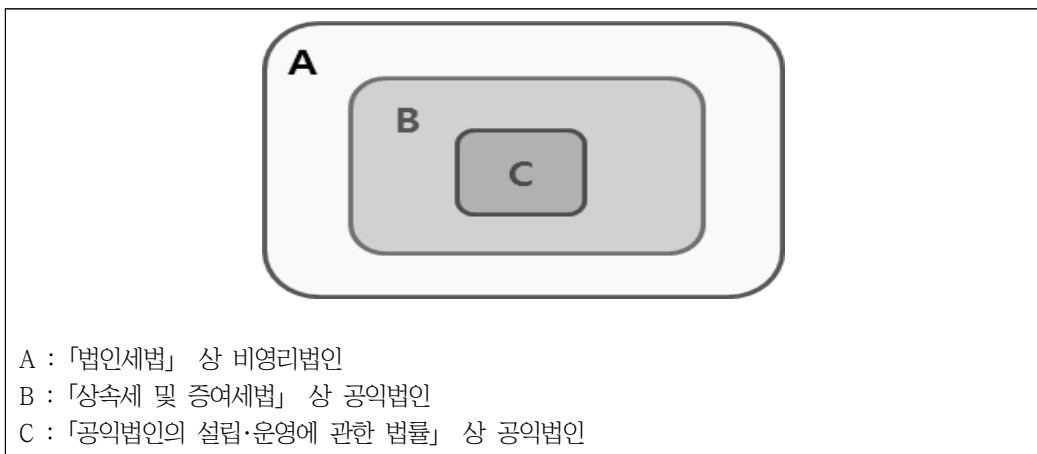
-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 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위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기관사업, 정당, 조합법인,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공원묘원 및 납골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반드시 사회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는 차이가 있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림 Ⅱ-1〉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비교



* 출처 : 국세청, 2018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2. 공익법인 현황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가. 공익법인 현황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수는 총 33,888개이고 그 중 종교법인이 17,97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장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종교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합 계
2012년	17,708	3,093	1,702	3,394	743	759	2,110	29,509
2013년	17,629	3,135	1,704	3,510	783	817	2,271	29,849
2014년	17,542	3,119	1,697	3,499	786	813	2,276	29,732
2015년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34,743
2016년	17,978	3,461	1,736	4,369	1,331	953	4,060	33,888

* 출처: 2017 국세통계연보

- 공익법인은 「민법」 및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각 유형별 회계기준은 <표 II-2> 와 같다.

〈표 II-2〉 공익법인 유형별 설립근거 및 회계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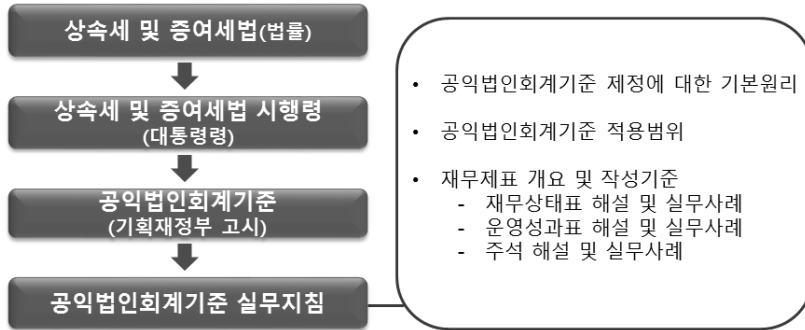
유형	설립근거법	회계기준	비고
종교	「민법」, 기타특별법 등	「교회회계기준」(불교 등 회계기준 없음) 등	복식부기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단식부기
교육	「사립학교법」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등	복식부기 (유치원, 공립초·중등은 단식)
학술장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없음	-
예술문화	「문화예술진흥법」 등	없음	-
의료	「의료법」 등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등	복식부기

나.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규정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 4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고시하였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적용범위,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등 주요 실무해설을 다루고 있다.

〈그림 II-2〉 공익법인회계기준 법적 체계도



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동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이다.
- (회계감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결산서류 공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표 II-3〉 사업목적별 인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단위:개)

	사회복지	교육사업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목적	기타	합 계
2015년	2,068	1,614	2,214	517	969	1,203	8,585
2016년	2,160	1,639	2,318	577	982	1,317	8,993

* 출처: NPO가이드스타 23호 (2018년 2월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

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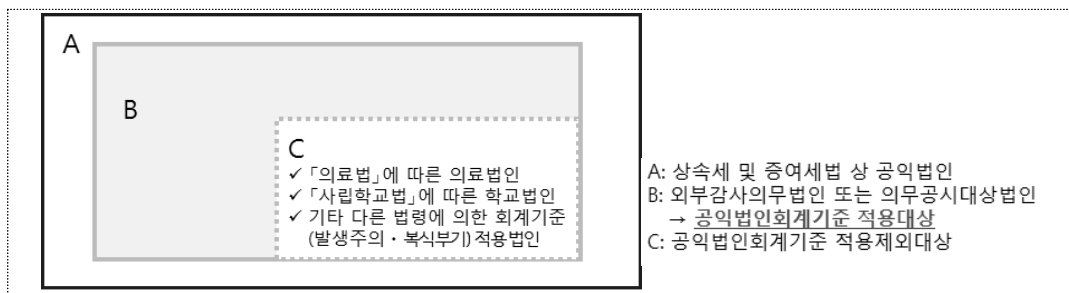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 등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가 없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법률에 따른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4)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이 밖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의사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의 판단
①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등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기부금, 순자산 등 공익법인 특성을 감안한 기준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공익법인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를 명확하게 표시하기에 적절함)
① 관련 법령 등에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같은 규정의 경우 별도의 회계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V-3>와 같다.

<그림 II-3>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단식부기를 적용 할 수 있다.(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5조)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익법인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 단식부기 적용 허용 및 필수적 주식기재사항 생략이 가능하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

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

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판단

- 각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인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에 관련 질의를 통해 해당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5728, '16. 11. 30.)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72, '14. 3. 31.)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재산-21431, '15. 4. 10.)
-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141, '10. 3. 9.)

* 출처 : 2018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을 예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질의를 통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총칙)

- 고용노동부 -

1. 제2조(정의)

1. 같은 사업장 소속 경비원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때, 단시간근로자 판단 방법

[질 의]

[관련 내용]

- 기본사항
 - 이름: 홍길동
 - 소속: ○○○ 위탁관리 용역회사
 - 근무처(업무): △△△아파트(미화원)
 - 근로계약기간: 2019.1.1.~2019.12.31.
 - 근무시간: 월~금 7시간, 토요일 3시간 (주 38시간)
- 참고사항
 - ○○○ 위탁관리 용역회사 소속 인원 중 타 단지(☆☆☆아파트)에서 동일 업무를 진행하는 주40시간 근무미화원 김○○이 있음
 - 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1.1.~ 2019.12.31.이나, ☆☆☆아파트와 ○○○ 위탁관리 용역회사 간의 계약이 연장될 경우 근로계약도 연장될 예정

- 위 경우 다른 아파트 미화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중인 김○○이 있으므로 홍길동 미화원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특정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사업장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귀 질의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 및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 38시간인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근로기준법-8048, 2007.11.29.)함을 고려하여,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 및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38시간 근로자가 종사하는 각 사업장(아파트)이 독립적이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476, 2019.11.27.)

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질 의]

- (질의 ①) 사업장에 1주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0명(A)과 3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명(B)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B가 통상근로자, A가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 (질의 ②) 1일 3시간씩 주 3일 1주 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C), 1일 4시간씩 주 5일 1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D), 1일 5시간씩 주 4일 1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E)가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D와 E중 누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①과 관련하여, 두 근로자 집단(A, B)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B가 해당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 근로자 B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집단 A(주 15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와 관련하여,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두 근로자(D,E)가 해당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 D, E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C(9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5, 2020.01.03.)

3.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보면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 특정한 반면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로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정의도 통상 근로자를 협소하게 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그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기간제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기간제법」상의 “근로자” 개념 간의 차이가 있는지, 「기간제법」상의 “근로자”가 좀 더 넓은 개념이 아닌 건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기 2개의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7, 2021.03.11.)

4. 조례에 따라 상임단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질 의]

- A시립국악단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임기와 재임용 사유를 정하고 있음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 ①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국악단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질의 ①) 상임단원의 신분을 유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②) 상임단원의 임기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질의 ③) 계약연장시 재임용에 대한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④)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이 계약기간 만료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재계약 미체결)가 불가능하여 재임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한시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 ①, ②에 대하여)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상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 동 조례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 ③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시의 조례,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④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다만, 귀 시의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 1729 판결,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끝.

(고용차별개선과-1980, 2022.09.02.)

5. 일용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질 의]

- 상시 고용이 아닌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

제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020, 2022.09.06.)

6. 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질 의]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다수 근로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여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표 편성 후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본사 직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함

[회 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며,
 -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희망 근로일을 특정하여 1일의 근로계약을 일시·간헐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지속 여부가 예견될 수 없는 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1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구인 과정 및 단체 대화방 운영 방법, 근로자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05.02.)

2. 제3조(적용범위)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지 여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는지 여부

[회 신]

-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등기한 위원회(위원장: 구청장)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 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고용차별개선과-1029, 2013. 5. 30.)
 - 「기간제법」 시행 시, 일부 조항의 단계적 적용을 위한 부칙(제8074호, 2006.12.21.)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별도로 법인격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922, 2019.04.25.)

8.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 의]

[관련 배경]

- A공사 조직
 - (국내) 본사, 국내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 (국외) 10개 지역본부 하에 127개 해외무역관*
 - * (인적 구성) '본사에서 파견된 본사 소속 근로자'와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구성
 - 현지 채용근로자는 본사가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현지직원'과 본사가 예산을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전담직원·일용직·임시직원 등'으로 구분

- (질의 ①) A공사의 해외무역관은 A공사의 하부조직에 해당하고, 해외무역관에 A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직원의 정원·채용·근로조건·징계(해고)·포상 등에 대해서 A공사(본사)가 이를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대책팀-1122, 2007.4.9.)에 따라 A공사의 해외 현지직원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②) 만약 A공사의 해외 현지직원에 대해서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단위로 계약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현지직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③)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함은 소위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근로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해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 「국제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 ②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처는 「국제사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며, 질의상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제출자료 및 유선답변상 확인된 바와 같이, A공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을 것을 내용으로 ‘현지직원’을 채용하고,
 -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 제14조 및 표준 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현지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할 것을 약정한다는 사정 등을 국제사법에 비추어볼 때, ‘현지직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며,
 -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64, 2020.05.12.)

9.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질 의]

[질의 배경]

- 질의 기관에서는 2020년 **쑈洞**의 주민자치회 전환(14개)을 추진하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임
 - * 주민자치회의 단체적 성격은 공공단체에 해당(법제처 유추해석)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민간위탁(시범운영:1년)
 - * 전담인력 인건비 (각 주민자치센터 1명): 2021년 최저임금 준용
 - *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 전담인력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각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선정
 - * 근무조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1년단위 근로계약, 주5일 근무, 일 8시간근무, 4대보험 적용, 퇴직급 지급
 - * 주요 업무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 재원: 전액 구비

- **洞**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여, 위탁한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사업 운영 전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 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 법을 적용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나아가, 주민자치회에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고, 주민자치회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사업 운영 전담인력)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상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 주민자치회에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이해되나,
 -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차별개선과-2597, 2020.11.24.)

10. A장학재단은 「민법」상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장인데 「기간제법」 제3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 의]

[관련 현황]

○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민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자 지방자치단체인 B시의 출연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 및 「B시 A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 '07.8.31. 설립 등기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B시장), 상임이사(B시 인재양성과장), 비상임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 사무국은 B시 인재양성과 소속 공무원 7명과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민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장인데 「기간제법」 제3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장학재단 업무를 겸직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지

[회 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기간제법」 제4조는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적용되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면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재단법인 A장학재단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장)를 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 재단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장학재단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82, 2021.12.30.)

11. 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기간제법」 제4조 적용 시점

[질 의]

- (현황) 우리 회사는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나, 파견근로자 강○○을 '22.7.1.자로 직접 고용함으로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직위	성명	입사일	최근 근로계약기간	비고
전무	○○○	'18.1.1.	'22.1.1.~'22.12.31.	기간제근로자
국장	○○○	'14.8.1.	'22.1.1.~'22.12.31.	기간제근로자
대리	○○○	'17.8.21.	'22.1.1.~'22.12.31.	기간제근로자
대리	○○○	'18.6.14.	'22.1.1.~'22.12.31.	기간제근로자
사원(파견직)	강○○	'20.7.1. '22.1.1.~'22.6.30.	'22.7.1.자로 직접고용 예정	

- (질의 ①) 파견근로자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강○○의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적용시기는
 - (갑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시작된 '22.7.1.부터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는 '24.7.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 (을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고 1개월이 경과된 '22.8.1.부터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는 '24.8.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 (질의 ②) 기존부터 직접 고용한 근로자 4명의 「기간제법」 제4조 적용시기는
 - (갑설) 질의 ①에서 파견근로자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강○○과 동일한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 (을설) 「기간제법」 부칙<법률 제8074호, 2006.12.21.>, 기존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 -2113, 2007.6.8.)에 따라 법 적용 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갱신 또는 연장하는 날('23.1.1.)로 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

[회 신]

[질의 ①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 강○○을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인 근로기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 2006.12.21. 제정된 「기간제법」(법률 제8074호)의 제4조 규정은 부칙 제1항(시행일)에 따라 2007.7.1.부터 시행하되,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은 제정 법률 시행일(2007.7.1.) 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법 제4조를 적용받지 않다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 법 제4조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도 부칙 제2항(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 기존부터 직접 고용한 근로자 4명의 경우 파견근로자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강○○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법 제4조를 적용받게 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74, 2022.06.07.)

12. 임기제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여부

[질 의]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적용되며,
 -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노력의무,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 노력 등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도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의 사용기간,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관련 사항은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 받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502, 2023.06.09.)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생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4일(화)	3월 5일(수)	3월 6일(목)	3월 7일(금)	3월 10일(월)
미 달 러 (USD)	1458.70	1459.60	1456.00	1441.60	1446.30
위 안 화 (CNH)	199.72	200.34	200.34	198.84	199.55
일 본 엔 (JPY)	976.37	973.42	978.26	974.28	980.54
유 로 화 (EUR)	1529.37	1552.14	1571.24	1555.92	1569.52
영 국 파 운 드 (GBP)	1852.69	1867.56	1877.15	1857.72	1869.85
캐 나 다 달 러 (CAD)	1006.66	1013.89	1015.94	1008.75	1005.84
홍 콩 달 러 (HKD)	187.55	187.79	187.35	185.49	186.11

통 화 명	3월 11일(화)	3월 12일(수)	3월 13일(목)	3월 14일(금)	3월 17일(월)
미 달 러 (USD)	1451.50	1457.90	1452.00	1451.90	1454.80
위 안 화 (CNH)	200.13	201.01	200.72	200.34	200.78
일 본 엔 (JPY)	988.29	986.00	979.86	981.64	979.33
유 로 화 (EUR)	1573.57	1591.44	1581.01	1575.60	1583.26
영 국 파 운 드 (GBP)	1869.02	1887.76	1882.52	1880.43	1881.13
캐 나 다 달 러 (CAD)	1005.44	1010.47	1011.14	1006.27	1012.77
홍 콩 달 러 (HKD)	186.85	187.62	186.89	186.82	187.17

통 화 명	3월 18일(화)	3월 19일(수)	3월 20일(목)	3월 21일(금)
미 달 러 (USD)	1448.00	1447.10	1452.30	1459.20
위 안 화 (CNH)	200.11	199.98	200.67	201.70
일 본 엔 (JPY)	969.37	968.74	976.70	981.14
유 로 화 (EUR)	1581.14	1583.42	1584.79	1584.33
영 국 파 운 드 (GBP)	1880.45	1881.30	1888.79	1891.93
캐 나 다 달 러 (CAD)	1012.94	1011.96	1014.00	1018.60
홍 콩 달 러 (HKD)	186.37	186.25	186.91	187.74

통 화 명	3월 24일(월)	3월 25일(화)	3월 26일(수)	3월 27일(목)
미 달 러 (USD)	1466.90	1466.90	1469.60	1465.30
위 안 화 (CNH)	202.41	202.04	202.24	201.49
일 본 엔 (JPY)	980.65	973.36	980.09	974.37
유 로 화 (EUR)	1587.33	1584.62	1585.33	1573.15
영 국 파 운 드 (GBP)	1894.21	1895.31	1901.88	1886.21
캐 나 다 달 러 (CAD)	1023.05	1024.59	1029.46	1024.15
홍 콩 달 러 (HKD)	188.71	188.69	189.01	188.45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생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